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후 기능 이관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36호·제2206639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 위원회로 기능 이관	4
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1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636호)]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2. 18.

다. 회 부 일: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639호)]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2. 18.

다. 회 부 일: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기능 이관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상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 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에 <u>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u> (이하	제6조(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 <u>육성위원회</u>) ① ----- ----- ----- ----- -- <u>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u>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육성위원회-----.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
----- 41명 -----

- 국가유산청장이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

⑥ (생략) ⑦ 그 밖에 <u>위원회 및 분과위원회</u>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u>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u>----- ----- -----.
---	--

[고도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u>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	<삭제>

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
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
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
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
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
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국가유
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
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

----- 「역사문화

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

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이하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

-----.

1. 2. (현행과 같음)

② ----- 역사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
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
회-----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

-----.
----- 역사
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
회-----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역사문
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시행자) -----

유산청장과의 협의와 <u>중앙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25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중앙심의위원회</u> 위원 및 <u>지역심의위원회</u>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u>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u>----- ----- -----. 제25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지역심의위원회</u> ----- ----- ----- ----- ----- -----.
--	---

나. 검토의견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 제6조에 따라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30명의 위원(당연직 14명, 위촉직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근거가 된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2021년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5회, 분과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음(2025년 1월 기준)¹⁾.

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소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소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1	-	-	-	-
2022년	1	1	1	-	-	-	-
2023년	4	2	2	-	2	2	-
2024년	1	1	1	-	2	2	-
총 계	7	5	5	-	2	2	-

※ 자료: 국가유산청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고도육성법」 제5조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의 지정·해제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19명의 위원(당연직 위원 9명, 민간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최근 4년간('21년~'24년) 본회의 6회, 소위원회 9회를 개최하였음(2025년 1월 기준)²⁾.

-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계	본회의			소위원회		
		소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소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3	1	1	-	2	-	2
2022년	2	1	1	-	1	-	1
2023년	3	1	1	-	2	2	-
2024년	7	3	3	-	4	4	-
총 계	15	6	6	-	9	6	3

※ 자료: 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르기는 하나, 현재까지 지정된 4개의 고도지구 (경주, 공주, 부여, 익산)가 모두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에

- 2) 「고도육성법」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 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역사문화권³⁾에 포함되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기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기능을 포괄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두 개정안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존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전환된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유사·중복된 기능을 하는 두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국가유산청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19명 중 당연직 위원 8명이 모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고, 민간위원도 두 위원회 모두 국가유산·역사, 문화관광·경관, 도시계획분야 등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운영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3)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정의)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 위원과 「고도육성법」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역사문화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 <u>실형</u> ----- -----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고도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u>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 ----- <u>지역심의위원회</u> ----- -----.
1.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u>실형</u> ----- -----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⁴⁾.

○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조제4호⁵⁾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임을 근거로 “동 조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시하였음⁶⁾.

○ 다만,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개선을 권고하였음.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5)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2019헌바171(병합), 2019헌바1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 관련 판례]

대상조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형의 선고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7개 부처 소관 2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5개의 법률안⁷⁾을 제출하였음.

○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고도육성법」의 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해당 규정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고도육성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7) 일괄개정 방식 5건(환노위 1건, 외통위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여성가족위 1건)

없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⁸⁾, 개정안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만 규정을 정비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8) 「역사문화권정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고도육성법」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참고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기준일 : 2024.12월)

설치근거 및 시행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5.3.6.)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효율적 추진
기능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사항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 (총19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가유산청장
	공무원 (총 9명)	국가유산청장(위원장), 관계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장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도 관할 광역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민간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명(10.0%), 비수도권 7명(70.0%), 청년 1명(10.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해촉기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

참고 2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기준일 : 2024.12월)

설치근거 및 시행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2021.6.10.)
위원회 구성일		·2021. 7. 1.
설치목적		·역사문화권 정책 · 제도 ·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원 (총30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촉직 위원 중 호선
	공무원 (총 14명)	·관계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의 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 ·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민간위원 (총 16명)	(직 중) 교육인 12명, 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7명(43.8%), 비수도권 10명(62.5%), 청년 0명(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6명(10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해촉기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